

#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1일 13시 38분



#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교통	3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3

보도자료

해명자료

##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2023.07.06 조회수 192 담당부서 주차차량과 담당자 김승민 연락처 061-659-416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양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7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남해안 가평도시 미래역수

신남해역수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금지구역	소 화 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24시간	1분이상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 단 보 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 스 정 류 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07:00~22:00	
	보 도 ( 인 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기타 구역	안 전 지 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07:00~22:00	7분이상
	이중/중앙선주차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 외 지 역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http://www.yeosu.go.kr>)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57, 4158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7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a href="#">전체(Zip)다운로드</a>	6-1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jpg (216 hit/ 455.5 KB) <a href="#">미리보기</a>
	6-2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jpg (214 hit/ 601.3 KB) <a href="#">미리보기</a>

**목록**

# Yeosu Web Contents



여수시